

재정운용세칙

[신한대학교 총학생회칙 세칙 제2호]

2019.07.25	제정	2022.09.08.	일부개정
2023.08.31.	일부개정	2024.04.27.	일부개정
2025.06.23.	일부개정	2025.09.08.	일부개정
2025.12.19.	일부개정	2026.04.03.	일부개정

전 문

제1장 총칙.....	1~4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5~8
제3장 회계.....	9~14
제4장 특별회계.....	16~20
제5장 특수목적회계.....	21~24
제6장 기구별 재정.....	25~38
제7장 재정운용규칙.....	39~4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세칙은 총학생회비 운용 단위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본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5조(예산안·결산안 심의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각 회계연도 초와 말에 예산안·결산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산하 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결산안은 공개되어야 한다.

③ 예산안·결산안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예산안·결산안은 신뢰할 수 있도록 본 세칙의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⑤ 예산안·결산안은 매년 초 본회 의결기구에서 인준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양식은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기구와 공유한다.

⑥ 예·결산안은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총학생회비의 집행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는 본회 각 기구의 운영, 행사,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② 총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⑤ 제5조 제2항의 예산안·결산안을 공개하는 단체의 재정 집행 또한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준용한다.

제7조(총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총학생회비 배분은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 운용을 총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에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총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한국의 예산회계법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 본회의 집행기구, 산하 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는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을 구분하여 각각 예산과 결산을 처리한다.
- ③ 회계연도는 학사 일정에 따른 학기 및 방학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계방학: 1월 1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1학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하계방학: 1학기 종강일의 익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2학기: 2학기 개강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장 회계

제9조(총수입)

- ① 총 수입은 총학생회비, 전년도 총학생회비 이월금, 학교 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 기부금을 말한다.
- ② 2학기 결산 후 재정을 운영하며 남은 수입금은 다음 연도의 기구들을 위해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총 지출)

- ① 총 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 ②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학기로 이월한다.

제11조(예산안의 편성)

-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세항·목·세목·단가·수량·합계 형식으로 하되 항은 각 사업별, 행사 별로 구분하고 목은 물품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정한다.
- ② 예산안에 비교란을 두어야 하며, 비교란에는 지출 항목에 대한 비교견적 내역을 포함하여 예산 산정의 근거를 기재할 수 있다.
- ③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④ 예산안은 지출 내역을 편성하여 해당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는다.)
- 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0%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예산의 집행은 각 회계연도 구분의 말일의 10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연도 구분의 말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집행이 완료된 이후 결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안의 작성)

- ① 결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세항·목·세목·단가·수량·합계 형식으로 하되 항은 각 사업별, 행사별로 구분하고 목은 물품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필요 시 세항과 세목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결산안 내에는 비교란을 두어야 하며, 비교란 내에는 변동사항 및 예비비의 집행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각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본 세칙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각 기구의 결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⑥ 결산안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 ⑦ 방학 기간 중 추가 집행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 ① 예산안 심의·의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확정된 예산을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안건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각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시 추가 경정에 대한 사유를 명시한다.
- ④ 예산안 심의·의결 후 변동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내역은 해당 회계연도 말 결산안으로 보고한다.
- 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본 세칙의 제11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비비는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4조(예산 전용)

- ① 각 항별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예산의 전용은 해당 기구의 회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전용된 예산의 내역은 결산 시, 심의 대상으로 하며, 전용의 사유 및 변경 내역을 명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증빙물) 증빙물이란 예·결산안에 첨부되는 근거자료를 뜻한다.

- ① 다음 각 호를 예산안의 증빙물로 한다.
 - 1. 타 업체 비교 견적
 - 2. 집행의 근거 사유
 - 3. 그 외 예산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② 다음 각 호를 결산안의 증빙물로 한다.
 - 1. 영수증
 - 2. 세금계산서
 - 3. 현금영수증
 - 4. 간이영수증(간이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한 항목에 대한 증빙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계좌이체 명세표를 첨부한다. 간이영수증의 비율은 전체 지출의 5% 이내로 제한한다.)
 - 5. 통장 사본
 - 6. 계산서
 - 7. 신용카드 매출전표
 - 8. 직불카드 매출전표

제4장 특별회계

제16조(특별회계의 집행)

- ① 학생자치기구는 특정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참가비 등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한 수입으로 조성되며, 학생회비 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해 운영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예산 및 집행)

- 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② 특별회계의 재정 집행은 해당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특별회계의 기간) 특별회계의 기간은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잔액이 학생회비로 귀속되는 일자까지로 한다.

제19조(특별회계의 결산)

- ① 특별회계를 운영한 경우, 해당 사업 종료 후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결산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결산은 보고된 결산안과 동일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잔액의 부당 사용 또는 횡령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특별회계 잔액의 처리)

- ① 특별회계의 사업 종료 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구의 학생회비로 귀속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학생자치기구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잔액의 귀속 및 분배는 각 기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경우, 특별회계의 잔액을 행사 참여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 단, 학생회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5장 특수목적회계

제21조(특수목적회계의 운영)

- ① 특수목적회계를 진행하고자 하는 단위는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생회비 계좌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수목적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특수목적회계의 승인)

- ① 학과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 운영이 필요한 특수목적회계는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적용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인준의 적용기간은 본 세칙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제23조(특수목적회계의 보고)

- ①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단위는 회계 운영 내역을 감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단위는 특수목적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특수목적회계의 종료)

- ① 특수목적회계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잔여 재원은 해당 기구의 학생회비로 귀속한다.

제6장 기구별 재정

제25조(총학생회비 책정) 총학생회비는 결정된 금액으로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지한다.

제26조(배분율) 총학생회비 배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다.

- ① 집행기구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당해 연도 총학생회비의 70%를 배분 받는다.
- ② 산하기구는 30%를 배분 받으며, 선출직으로 구성된 단과대학과 동아리연합회는 당해 연도 본회 이월금의 30%와 각 자치기구의 총학생회비 납부자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분받는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본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 ④ 산하기구에 배분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30%를 초과할 수 없다. (배분된 금액은 기본금을 포함한다.)

제27조(의결기구 재정)

- ①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의결기구 운영에 사용된다.
-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③ 의결기구 재정은 사무용품비 및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결산안 작성 시 작성하며, 예산집행국장이 집행기구 예산안·결산안에 포함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28조(집행기구 재정)

-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총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제29조(집행기구의 총학생회비 배정)

- 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당해 연도 총학생회비의 70%를 집행기구에 배정한다.
- ②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누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1. 이월금
 - 2. 국서·위원회별 행사 및 사업 재정
 - 3. 운영비 및 사무비
 - 4. 그 밖의 재정

제30조(차기 집행기구 이월금) 이월금은 당해 연도 1학기 결산 수입 항목 기준 10% 이내로

책정하고 잔액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31조(국서·위원회별 비용) 국서·위원회별 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서별 업무의 추진, 활동, 행사, 사업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2조(운영비)

- ①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3조(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재산조정비, 지원금, 예비비 등 제19조 및 제20조, 제25조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제34조(산하기구 재정)

- ① 산하기구 재정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산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집행위원회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35조(산하기구의 총학생회비 배정)

- 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당해 연도 총학생회비의 30%를 산하기구에 배정한다.
- ② 당해 연도 총학생회비의 기준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단과대학 학생회 재정)

- ① 산하기구에 배정된 금액에서 기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각 단과대학별로 총학생회비 납부 비율만큼 배정한다.
- ②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매해 연도 1회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신생 단과대학 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급액을 논의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 지원은 제한된다.

제37조(동아리연합회 재정) 산하기구에 배정된 금액에서 기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학생회비 납부 비율만큼 배정한다.

제38조(기타 운영비 재정)

- ① 기타 운영비 재정은 선거 공영 기금과 각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되며, 본회 재정에 포함된다.
- ② 기타 운영비 재정운용의 책임은 선거 공영 기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경우 재정 담당자 혹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있다.

제7장 재정운용규칙

제39조(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정·개정·폐지)

- 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의 발의에 따라 발의한다.
-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